

의안번호	2201496
의 퇴 인	이수진 의원
회 답 일	2024.07.25.
추 계 번호	24B18014

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,900만원, 2030년 1,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,600만원(연평균 1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안 제7조의2(특별위원회의 설치 등) 신설	19	19	19	19	19	96	19

주: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)	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7의2.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7조의2(특별위원회의 설치 등) 신설	제7조의 기본계획을 제3조제3항의 사회적 대화 기반 추진 원칙에 따라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(제1항)	의무규정
		특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함.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로 봄(제2항)	의무규정
		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)	—	• 미대상 — 개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2	안 제7조의2(특별위원회의 설치 등) 신설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고용정책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두고, 특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
-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1.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
 2.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
 3.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

-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20명으로 구성되고,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같도록 규정
 -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·산업별 연합단체,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
 -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, 전국적 규모의 소상공인·자영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
 -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,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부처의 장이 임명
 -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 및 노동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와 사업주 단체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
- 이 중 민간위원은 위원 구성 조항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(19명)의 3분의 2 이상(13명)과 공익위원(3명)으로 가정
 - 민간위원: 16명
- 회의참석 사례금(안전 검토비 등 포함)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⁾
 -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회의개최 횟수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특별위원회 구성·운영 비용추계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민간위원 수(A, 명)	16	16	16	16	16	—
회의개최 횟수(B, 회)	4	4	4	4	4	—
회의참석사례금(C, 만원/명·회)	30	30	30	30	30	—
추가재정소요(D=A×B×C, 백만원)	19	19	19	19	19	96

주: 1.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 2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1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내로 편성(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, 2024. 5., p.218)

- 개정안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,900만원, 2030년 1,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,600만원(연평균 1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안 제7조의2(특별위원회의 설치 등) 신설	19	19	19	19	19	96	19

주: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